



규정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문서번호	TWP-A604
제정일자	2004. 03. 01.
개정일자	2012. 06. 04.
개정번호	2
페이지	1/11

목 차

- 제1장 총칙
- 제2장 조직
- 제3장 재정
- 제4장 입주 및 졸업
- 제5장 입주업체 부담금
- 제6장 시설관리
- 제7장 보칙
- 부칙

작성부서	산학협력단	제정일자	2004. 03. 01.
------	-------	------	---------------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 책							
서 명							
일 자							

	규정	문서번호	TWP-A604	
		제정일자	2004. 03. 01.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개정일자	2012. 06. 04.	
		개정번호	2	페이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산학협력단 내에 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4>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 대학 교직원, 재학생 및 지역주민 중 창업 희망자가 창업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2. 6. 4>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보육사업”이라 함은 창업촉진 및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 희망자에게 시설, 공간 및 기술 등의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입주자”라 함은 보육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작업을 추진하는 창업자를 말한다.<개정 2012. 6. 4>
3. “졸업”이라 함은 입주자가 보육센터의 지원을 받아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써 자립경영 기반이 구축되어 독립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계약이 만료되어 보육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6. 4>
4. “연장”이라 함은 입주기간이 만료되어 졸업해야 하지만 사업 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5. “퇴거”라 함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6. “입주일”이라 함은 입주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된 기일을 말한다.<개정 2012. 6. 4>

제4조(사업) 보육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 6. 4>

1. 입주자 선정, 졸업 및 퇴거에 관한 사항 및 지원
2. 기술개발 연구지원 및 경영지도
3. 이 대학과 입주자간의 상호 연구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개정 2012. 6. 4>
4. 산업자금 및 기술에 관한 정보 제공
5. 창업교육 및 연수지원
6. 시설·설비 및 인력지원
7. 유망 창업자 발굴

	규정	문서번호	TWP-A604	
		제정일자	2004. 03. 01.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개정일자	2012. 06. 04.	
		개정번호	2	페이지

- 8. 대학 내 시설의 공동사용 및 학생의 현장지원
- 9. 재학생 예비창업자 발굴 및 벤처기업의 활성화 지원
- 10. 그 밖에 보육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개정 2012. 6. 4>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① 보육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책임교수, 운영위원회, 행정지원실을 둔다.

② 보육센터 및 입주업체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 및 기술지원팀 등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2. 6. 4>

제6조(센터장 및 책임교수) ① 센터장은 이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 6. 4>

② 센터장은 보육센터를 대표하고 보육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③ 책임교수는 이 대학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책임교수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서 센터장을 보좌하여 필요한 경우에 센터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이 대학 교직원 및 법인 이사, 연구기관 연구원, 유관기관 전문가, 일반기업의 임원들 중에서 센터장이 4명 이상 10명 이하로 위촉한다.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 6. 4>

②(회의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12. 6. 4>

③(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 6. 4>

④(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2. 6. 4>

1. 보육센터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상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 6. 4>
2. 입주업체 선정에서 졸업까지의 모든 사항<개정 2012. 6. 4>
3. 입주업체에 대한 고충처리 및 지원방안
4. 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 및 처리<개정 2012. 6. 4>
5. 위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업무에 대한 심의 및 협의 결정

	규정	문서번호	TWP-A604	
		제정일자	2004. 03. 01.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개정일자	2012. 06. 04.	
		개정번호	2	페이지

제8조(행정지원실) ① 행정지원실(이하 “지원실”이라 한다)은 센터장의 관할 아래 두며, 보육 센터에는 매니저, 연구원, 조교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2. 6. 4>

② 지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센터의 일반사무 및 회계 업무
2. 입주업체 선정에서 졸업까지의 제반 행정 업무
3. 입주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업무
4. 보육센터 내의 각종 기기 설치·운용 및 유지 보수
5. 대내·외 창업 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업무
6. 그 밖에 보육센터와 관련된 제반업무<개정 2012. 6. 4>

③ 보육센터 매니저는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6. 4>

제9조(경영 및 기술지원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센터 내에 경영 및 지원기술팀(이하 “경영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2. 6. 4>

1. 창업 관련 교육
2. 일반 경영에 대한 컨설팅
3. 현장 및 고유 기술에 대한 컨설팅
4. 창업유관기관과의 연계
5. 세무, 법률, 특허 등에 대한 컨설팅
6. 그 밖에 입주업체 지도를 위한 제반사항<개정 2012. 6. 4>

② 경영팀은 위원회에서 추천한 이 대학의 전임교원 및 연구원, 기업체 전문가 등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입주업체의 기술개발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문교수(Doctor Company)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재정

제10조(재원) 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중소기업청 지원금, 대학 지원금, 입주자 관리비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12. 6. 4>

제11조(예산 및 결산) 보육센터의 예산과 결산은 산학협력단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12조(운영규정 등) 보육센터 운영에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 관련법규와 운영규정, 운영위원

	규정	문서번호	TWP-A604
		제정일자	2004. 03. 01.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개정일자	2012. 06. 04.
		개정번호	2

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2. 6. 4>

제4장 입주 및 졸업

제13조(신청) 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보육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4>

제14조(대상 및 자격) ①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4>

1. 신기술보유자로서 창업과 관련한 각종 시설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창업희망자
2. 창업계획을 갖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부족하여 경영자문이 필요한 자
3.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
4. 대학의 재학생 창업동아리, 졸업생으로서 창업 희망자
5. 아이디어는 있으나 기술 개발력과 자금이 없는 사업자
6. 기술 집약적 기업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기업으로서 1년 이내에 별도 법인화가 가능한 기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선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 6. 4>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 폐수, 매연, 소음, 진동 등 공해다발 업종을 영위하는 자
3. 입주선정평가에서 평점평균이 60점 미만을 받은 자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창업자 역량
2. 기술성
3. 상품성
4. 대학/보육센터 협력<개정 2012. 6. 4>

제16조(계약기간 및 연장) ① 보육센터의 입주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입주 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 또는 생산형 입주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6. 4>

② 입주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육센터의 승인을 계약종료일 전까지 받아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규정	문서번호	TWP-A604
		제정일자	2004. 03. 01.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개정일자	2012. 06. 04.
		개정번호	2

<개정 2012. 6. 4>

제17조(입주 승인의 취소) 입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를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입주 승인을 받은 경우
2. 입주 승인 후 2주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3.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않는 경우

제18조(의무) ① 입주업체는 보육센터의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입주업체는 보육센터 및 다른 입주업체의 재산과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6. 4>

제19조(평가) ① 보육센터는 입주자에 대해 자체 평가를 통해 사업진행 사항을 평가한다.

② 입주업체는 입주기간동안 매 반기 경과 후 5일 이내에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보육센터가 요구하는 양식을 갖추어 보육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 및 평가횟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위원 : 보육센터 운영위원회, 매니저
2. 평가횟수 : 매년 2회

④ 평가시점으로부터 반기 이내에 연장심사 또는 입주심사를 받은 업체에 대하여서는 자체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변경신고)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보육센터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보육센터로부터 승인 받은 사업계획서의 사업 내용 변경
3. 법인 전환
4.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된 계획서 및 사유서
2.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개정 2012. 6. 4>

제21조(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개정 2012. 6. 4>

	규정	문서번호	TWP-A604
		제정일자	2004. 03. 01.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개정일자	2012. 06. 04.
		개정번호	2

2. 임대료, 사용료 등 입주자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지연하는 경우
3. 보육센터 운영규정의 위반 또는 보육센터의 사업수행에 역행하는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보육센터 및 이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개정 2012. 6. 4>
5.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2. 6. 4>


-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센터는 입주자에게 서면으로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통보한다.
- ③ 입주자가 퇴거명령을 받은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보육센터는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입주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2. 6. 4>
- ④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퇴거 신청서를 희망퇴거일 1개월 전까지 보육센터에 제출하고, 보육센터가 퇴거를 승인한 경우에만 퇴거할 수 있다.
<개정 2012. 6. 4>
- ⑤ 규정대로 퇴거한 경우 입주보증금을 반환한다.

제22조(졸업)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시킬 수 있다.

1. 제품개발과 시판의 성공 등으로 입주자가 독립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경우
2. 입주계약이 만료된 경우
- ② 졸업승인을 얻은 자는 졸업시점으로부터 3년간 자동으로 역외보육을 하는 것으로 보며, 졸업 후 자본이득에 관한 처리는 입주계약에서 명시한 대로 적용한다.<개정 2012. 6. 4>
- ③ 제1항의 졸업대상자는 졸업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졸업신청서 및 졸업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육센터는 졸업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2. 6. 4>

제23조(지원) 보육센터는 입주업체 창업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한다.<개정 2012. 6. 4>

1. 엔젤자금 유치 지원 : 사업전망이 유망하다고 평가된 업체에 대하여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엔젤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행사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시설 지원 : 입주자는 필요한 경우 보육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실비로 납부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입주자가 학내 설비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장을 경유하여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4>
3. 경영·기술지도 및 연수 지원 : 보육센터는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세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분야와 세부기술 분야에 대한 지도 및 연수를 실시 할 수 있다.

	규정	문서번호	TWP-A604	
		제정일자	2004. 03. 01.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개정일자	2012. 06. 04.	
		개정번호	2	페이지

4. 졸업 후 지원 : 졸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 우선 지원, 지도 및 연수, 판매 알선, 정보 제공, 관련기관과의 연계 지원 등을 통하여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4>

제5장 입주업체 부담금

제24조(입주업체 부담금) ① 입주업체는 입주보증금, 보육관리비, 성공불 환원금 등을 보육센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주업체의 부담금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입주보증금	보육관리비	제세공과금	비 고
드림하우스	150,000원/평	15,000원/평	1,500원/평	부가세 별도
효암관	150,000원/평	12,000원/평	1,200원/평	
정수시기	입주계약체결 시	입주 후 12개월 합산 청구		

<개정 2012. 6. 4>

③ 보육센터는 재정자립을 위해 입주업체에 대하여 관리비 차등징수, 보육지원금 환원 등의 정책을 실시하되, 이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시행은 보육센터의 별도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2. 6. 4>

제25조(입주업체 환원금) ① 입주업체는 보육센터 입주 중 발생한 이득 및 졸업 후 발생한 이득에 관하여 보육센터로 환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환원금의 내용 및 금액은 입주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한다.

제26조(성과급) 보육센터의 운영성과에 따라 센터장, 책임교수 및 매니저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시설관리

제27조(시설물 사용) ① 입주자는 교내의 공용시설물 및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4>

② 입주자는 보육센터 내 제작실, 공동기기실, 회의실 등 공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대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정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육센터는 해당 입주자에게 소정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2. 6. 4>

	규정	문서번호	TWP-A604	
		제정일자	2004. 03. 01.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개정일자	2012. 06. 04.	
		개정번호	2	페이지

제28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① 입주자는 목적물 내부의 칸막이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센터의 승인을 얻어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자는 졸업 또는 퇴거 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그 비용은 시설의 설치자 또는 변경자가 부담한다.

제29조(물품 반출입) 입주자는 보육센터 내로 물품을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12. 6. 4>

1. 인화물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은 보육센터 내로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해 부득이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용기 등 위험방지시설을 갖추고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소음 및 악취, 미풍양속의 저해 등 이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을 저해하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사업 목적의 달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4>
3. 보육센터는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소독 및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반출물품은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약정된 기일 내에 지정된 장소에 원위치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방재관리) 입주자는 보육센터의 방재관리에 관한 규정 및 보육센터 내에 비치된 방재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4>


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소각행위를 할 수 없다.
2. 입주자는 방재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담당 기관 또는 보육센터 행정지원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보육센터 또는 담당 기관이 실시하는 방재관리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보육센터가 방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 한다.

<개정 2012. 6. 4>

제31조(출입관리) ① 창업보육실 출입문의 열쇠는 입주자와 보육센터가 각 1개씩 보관한다.

② 입주자가 열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육센터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입주자가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육센터에 신고하고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신규 제작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개정 2012. 6. 4>

	규정	문서번호	TWP-A604
		제정일자	2004. 03. 01.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	개정일자	2012. 06. 04.
		개정번호	2

④ 입주자가 열쇠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잠금장치를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특별한 잠금장치가 필요하거나 열쇠를 복제해야 하는 경우 보육센터의 승인을 받아 설치 또는 복제할 수 있다.<개정 2012. 6. 4>

제32조(보험가입) 보육센터는 입주자에게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당해 보험금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33조(손해배상) ① 입주자 및 고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육센터의 시설물을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당해 입주자가 그 손해를 보육센터에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및 고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보육센터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보육센터에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4>

제7장 보칙

제34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이 대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6. 4>

제35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대학의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 6. 4>

제36조(기타) 이 규정의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